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할 시설물을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8에 따른 주요 구조부로 구체화하고, 동영상 촬영 및 제출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설기술진흥법·시행령·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 000호

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

일부개정고시안

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제6항 중 “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”을 “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8에 따른 주요 구조부(이하 “주요 구조부”라 한다)”로, “등”을 “등(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사진”을 “사진 및 동영상”으로 한다.

제93조제11항 중 “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”을 “주요 구조부”로, “등”을 “등(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항 중 “사진”을 “사진 및 동영상”으로 한다.

제110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준공 사진첩 및 주요 구조부 촬영 동영상

제118조제1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준공 사진첩 및 주요 구조부 촬영 동영상

제133조제2항 중 “특히”를 “주요 구조부 외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

한다.

제16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준공 사진첩 및 주요 구조부 촬영 동영상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3조(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 명령 등) ① ~ ⑤ (생략)	제63조(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 명령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<u>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.</u>	⑥ -----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8에 따른 주요 구조부(이하 “주요 구조부”라 한다)----- 등(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한다)-----.
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5항과 제6항에서 촬영한 <u>사진</u> 은 디지털(Digital) 파일 등을 제출 받아 수시 검토·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.	⑦ ----- <u>사진 및 동영상</u> -----.
제93조(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 명령 등) ① ~ ⑩ (생략)	제93조(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 명령 등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
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<u>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.</u>	⑪ ----- <u>주요 구조부</u> ----- 등(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한다)

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0항과 제11항에서 촬영한 <u>사진</u> 은 디지털(Digital)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·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	----. ⑫ ----- ----- <u>사진 및 동영상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10조(시설물의 인수·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) ① ~ ⑥ (생략)	제110조(시설물의 인수·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, 작성하여야 한다.	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준공 사진첩</u>	1. <u>준공 사진첩 및 주요 구조부 촬영 동영상</u>
2. ~ 7. (생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⑧ (생략)	⑧ (현행과 같음)
제118조(공사관련 서류 검토·보고)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	제118조(공사관련 서류 검토·보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공사 준공 후 가. (생략) <u>나. 준공 사진첩</u> 다.·라. (생략)	4.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<u>나. 준공 사진첩 및 주요 구조부 촬영 동영상</u> 다.·라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33조(사진촬영 및 보관) ① (생략)	제133조(사진촬영 및 보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사감독자는 <u>특히</u>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 ③ (생략)	② ----- <u>주요 구조부 외에</u> ----- -----. <u>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 ③ (현행과 같음)
제167조(현장문서 인수·인계)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	제167조(현장문서 인수·인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준공 사진첩</u>	1. <u>준공 사진첩 및 주요 구조물 촬영 동영상</u>
2. ~ 7. (생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